



부패행위란?

1.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지위·권한 남용 또는 법령위반을 통해 사익을 도모하는 행위
2. 예산집행·재산관리·계약과정에서 공공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3. 1,2와 같은 행위나 은폐를 강요·권고·유인하는 행위

청탁금지법 위반행위란?

1. 공직자에게 부정청탁을 하거나 공직자가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행위
2. 공직자 및 배우자가 수수금지 금품을 받거나 요구·약속하는 행위
3. 그 밖에 「청탁금지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위반하는 행위

신고하는 방법

인 터 넷 1398.acrc.go.kr

팩 스 044-200-7972

우편·방문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87 NH농협생명빌딩(동관) 1층
부패공익침해신고센터



부패·청탁금지법 위반 신고

안전하게 보호해 드립니다



신고자 보호·보상 제도



안심하고 신고하세요~

안전하게 보호해 드립니다



신고자 보호 제도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 누구나 **안심**하고 **부패신고** 및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신고자 보호·보상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고자의 비밀을 보장합니다.

신고자의 동의 없이
그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공개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신고자는 책임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패·청탁금지법 위반 신고의 경우
직무상 비밀준수
의무가 면제되며,
신고와 관련한
신고자의
형사 및 징계 책임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자는 신분보장조치를 위원회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신고 등을 이유로
전보, 징계 등
불이익을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원상회복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신고자는 신변보호조치를 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신고 등을 이유로
신고자와 친족·동거인이
신변에 불안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신고자 보상 제도

「부패방지권익위법」 및 「청탁금지법」에 따른 신고로 인하여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때 신고자는 위원회에 보상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최대 30억 원 지급)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청렴신문고 홈페이지(<https://1398.acrc.go.kr>)의 '제도안내→보호·보상' 메뉴를 참조하거나 아래의 번호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국번 없이 1398, 110 또는 044-200-7747~8(부패신고자 보호), 7743~5(부패신고자 보상)